

6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선지원

◆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담당 역할

학교장,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부모, 학교

상담, 치료, 일시
보호 비용 청구

공제회

심사·지급
구상권 행사

◆ 학교폭력 선치료 지원 - 후구상 시스템이란?

-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심리 상담 비용 등을 우선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을 가해자(학부모)에게 구상권 행사
 - ※ 가해자 배상원칙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모든 비용을 끝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피해보상의 내용

구분	내용
심리상담 및 조언	인정기관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 기간 : 2년(1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일시보호	인정기관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 기간 : 최대 30일
치료 및 치료 위 한 요 양	인정기관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 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약국 등 기간 : 2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7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치료 지정기관

순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설립주체
1	강남 Wee센터	울산 남구 돌질로 91번길 34	052)272-5041	교육청
2	강북 Wee센터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052)219-5655	교육청
3	교육과학연구원 Wee센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03	052)255-0180	교육청
4	청소년쉼터(男)(일시보호)	울산 북구 두부곡 7길 10(2,3층)	052)261-1388	법인
5	청소년쉼터(女)(일시보호)	울산 남구 돌질로106(5층)	052)269-1388	법인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 중구 학생로 76	052)227-2000	시청
7	울산심리상담연구소	울산 중구 성남동 10	052)247-9500	법인
8	라브리심리상담연구소	울산 동구 마드래길 64	070)8837-7434	법인
9	김순업심리상담연구소	울산 남구 왕생로 120(3층)	052)276-5508	법인
10	울산범죄피해학생지원센터	울산 남구 법대로 8번길 32	052)223-2359	법인
11	청소년대안활동연구회	울산 남구 월평로 67-1	052)903-5279	법인
12	한국집중력센터	울산 남구 문수로 335번길 6	052)260-7701	법인
13	아이플러스심리언어센터	울산 남구 중앙로 218-1	052)227-8007	법인
14	태화아동청소년발달연구소	울산 중구 반구동 442-1	052)297-8203	법인
15	울산아동청소년상담센터	울산 동구 동부동 260-1 302호	052)251-1004	법인
16	도원예일언어심리센터	울산 북구 연암동 401-5	052)283-1999	법인
17	조혜원아동부모상담센터	울산 남구 봉월로 24(3층)	052)266-8603	법인
18	예일아동청소년상담센터	울산 남구 팔들로 151번길	052)265-3289	법인
19	울산아동발달센터	울산 남구북부순환도로 39(4층)	052)224-8879	법인
20	울산Y교육상담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2길 3-16	052)254-3050	법인
21	남구정신보건센터	울산 남구 삼산동 1538-4	052)227-1116	시청
22	울산병원	울산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	052)259-5000	법인
23	동강병원	울산 중구 태화로 239	052)241-1114	법인
24	울산굿마인드의원	울산 남구 삼산동 1474-1	052)269-0167	법인
25	울산마더스병원	울산 남구 달동 1311-15	052)270-7006	법인
26	울산중앙병원	울산 남구 신정동 1651-9	052)226-1100	법인
27	서울산보람병원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78	052)255-7116	법인
28	현양신경정신과의원	울산 중구 성남동 95-3	052)244-9649	법인
29	인산병원	울산 중구 남외동 514-1	052)705-5000	법인
30	마인드닥터의원	울산 남구 신정4동 1232-1	052)260-7525	법인

※ 2012. 11. 30. 기준으로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안전한 학교 행복 울산교육

학교 안전 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안내

학생 교육활동 보상 범위 확대
학교폭력 선치료 지원 - 후구상 시스템 도입



1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이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

2 학교안전사고란?

◆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 통상적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에 발생한 사고
-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등의 사고
- 원인 미상의 식중독 및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학교 급식 사고
-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

3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 공제급여 내용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지급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일부 항목 제외)
장해급여	요양 종료 후 장해 시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지급
간병급여	요양 종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위자료 및 장의비 지급
위로금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

4 공제급여 청구

◆ 학교를 통해서 공제회로 신청할 경우

- 치료완료 후 구비서류를 학교로 제출

◆ 공제회로 학부모 직접 청구할 경우

-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ulsan.ssif.or.kr)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 치료완료 후 작성한 공제급여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

◆ 공제급여 청구서 구비서류 및 지급절차

구 분	요양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공제급여청구서(공제급여시스템참고)1부	○	○	○	○
* 공제급여 청구서(학부모 날인)		○	○	○
사고발생통지서 결재받은 사본 1부	○	○	○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1부	○	○	○	○
청구자(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	○	○
진단서 원본 1부		○	○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
장해진단서 원본 1부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
계	4부	6부	8부	8부

- 공제급여 청구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소멸시효)에 청구**
- 공제급여 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추가 14일 연장가능)
- 공제급여 결정 불복 시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심사청구

5 공제급여 지급범위 및 인정기준

◆ 요양급여지급 세부 기준

항목별	내 용
입원·외래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
상병실료	○ 화상, 세균감염,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의학적 소견서 제출)
방사선영상진단료(MRI)	○ 의사소견에 따라 1회 인정, 상태의 확인, 상병상태가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수술 후 상병 상태 확인을 위한 경우에 추가로 1회 지급 (의학적소견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무통·영양주사제	○ 무통주사제는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 다만, 영양주사제는 지급 제외
성형수술비	○ 화상 반흔제거 수술비는 2회 인정 (의학적 소견서 제출) ○ 사고에 의한 흉터, 반흔 등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 인정 (의학적 소견서 제출)
물리치료비	○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에 한하여 지급 - 의료기관이 아닌 스포츠센터 등에서 치료한 재활치료비 등은 지급제외
치아보철비	○ 치아보철비는 치아 1대 당 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지급 ○ 캐스트코아 134,000원, 포스트 124,000원, 레진 1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임플란트는 1대당 2,000,000원의 한도 내 인정 (의학적 소견서제출) - 다만,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않음.
한방치료	○ 침,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보험수가에 의한 비용만 지급
기타비용	○ 서류 비용은 제출한 진단서 1부에 대하여 실비지급(50만원 초과시) ○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 ○ 간식, 보호자 식대, 보양제, 교통비 등은 지급 제외